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공채 선발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

[2021.9.11. 시행 가책형]



클로저 이상용

현)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모두공 법원직 민법 전임
모두경 경찰간부 민법 전임
프라임 법학원 헌법 담당

youtube: 클로저 이상용

Instagram: mestarry_v2[DM으로 상담 가능]
E-mail: lacoda1@naver.com

모두공

<총평> [시험난이도: 중][문제풀이시간: 상]

(1) 형식적인 면에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되었는데 역대 시험 중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이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를 높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판례가 쉬웠고, 평이한 조문문제와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어 문제의 난이도는 쉬운편이었습니다.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을 무한반복하시고 저의 최신판례 유튜브 특강까지 챙기셨다면 90점 이상(-2개)의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단, 시간에 쫓기셨다면 난이도와 무관하게 점수가 낮았을 것입니다.

(2) 조문문제: 공직선거법은 어느 해의 시험이라도 조문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왔고, 올해도 익숙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좀 더 특이한 것은, '옳은 것은'을 묻는 문항이 많아졌고, 판례보다는 조문을 묻는 지문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책형 20번(기부행위)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충실히 암기하셨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3) 판례문제: 조문집에 모두 실려있는 판례가 출제되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25문항을 기준으로 대략 3문항 정도에서 판례(헌재결정)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는 순수 판례지문 문제는 없습니다. 가책형 기준 21번 느지문은 2021년 4월의 중요한 최신 헌재결정으로, <클로저 이상용> 유튜브강의(공직선거법 AS특강6)와 자료를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출제될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드렸고, 앞으로도 최신 중요 판례는 항상 꼼꼼하게 시험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한 보람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

• 테마별 기출 지문 분석표

2021	조문	조문+판례
문항	1, 2, 3, 4, 5, 6, 7, 8,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9, 12, 21

2021.09.13.

클로저 이상용

01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60조4 (예비후보자공약집)

-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가7급 2021>

② 【○】

제60조4 (예비후보자공약집)

-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국가9급 2015, 2020, 2021> <국가7급 2016, 2020, 2021>

③ 【×】

제60조4 (예비후보자공약집)

-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국가9급 2020> <국가7급 2021>

④ 【○】

제60조4 (예비후보자공약집)

-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20> <국가7급 2021>

정답 ③

0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①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가9급 2016, 2019> <국가7급 2014, 2017, 2021>

②【×】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3, 2021> <국가9급 2017>

③【○】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9급 2014, 2019> <국가7급 2017, 2021>

④【×】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9, 2021>

정답 ③

0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국가9급 2016><국가7급 2021>

②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9급 2016><국가7급 2021>

③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가7급 2021>

④ 【×】 ★★★ 최고난이도 지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공선법 §8의9①)해야 하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선법 §8의8⑨, 1호).

★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3판) p22의 예상지문에서 유사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시험 조문지문 중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생각된다.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국가7급 2019, 2021>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정답 ③

0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 ③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국가7급 2013, 2020, 2021> <국가9급 2018>

② 【×】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가7급 2021>

③ 【○】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9급 2018> <국가7급 2021>

④ 【○】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정답 ②

05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해설

① 【○】 ④ 【○】

제40조 (명부열람)

-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5, 2018, 2021〉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국가7급 2015, 2018, 2020, 2021〉

② 【×】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 ①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7급 2015, 2021〉〈국가9급 2021〉

③ 【○】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국가7급 2014, 2015, 2017, 2021〉

정답 ②

06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1〉

-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해설

① 【×】 ④ 【○】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가9급 2019〉〈국가7급 2021〉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국가7급 2016, 2021〉〈국가9급 2016〉

300인 이상 500인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국가9급 2017, 2021〉〈국가7급 2018〉

② 【×】 ★ 지역구사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공선법 §47⑤)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③ 【×】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국가7급 2016, 2017, 2021〉

정답 ④

07

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④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3, 2021〉〈국가9급 2014, 2017, 2018, 2019, 2020〉

②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 2020〉〈국가7급 2016, 2021〉

③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21〉

④ 【×】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4, 2015〉〈국가7급 2021〉

정답 ①

08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①【×】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국가7급 2021〉

②【×】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7급 2015, 2021〉

③【○】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④【×】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 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국가9급 2020〉〈국가7급 2021〉

정답 ③

09

서명·날인운동금지 및 인쇄물배부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1>

- ①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서명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해설

① 【×】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부당한 경쟁과 경제적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같은 입법목적에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규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인쇄물배부금지의 기간이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정되고, 금지내용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6.6.30. 2014헌바253). ★ 조문집 p183

② 【○】 서명운동금지조항의 '선거운동'이라는 개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명운동금지조항은 서명·날인에 의한 선거운동의 특수성과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우리의 선거현실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서명운동금지조항이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한다는 점, 선거구민에 대해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거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명운동금지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5.4.30. 2011헌바163).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18호(이하 '서명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③ 【×】 ★ 후보자도 제외하지 않음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국가7급 2021>

④ 【×】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국가7급 2021>

정답 ②

10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당·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당·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당·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137조의2 (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9급 2021〉〈국가7급 2021〉

② 【○】

제138조 (정당·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당·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당·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국가9급 2013, 2015, 2016, 2019, 2021〉〈국가7급 2021〉

③ 【○】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③ 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국가7급 2020, 2021〉

④ 【×】★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② 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국가9급 2018〉〈국가7급 2021〉

정답 ④

11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3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다.
- ④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해설

①【×】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21〉

②【×】★ 최종병기 객관식 공직선거법 p452 문제 1번 c 지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2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3조 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국가7급 2021〉

③【×】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가9급 2017, 2020〉〈국가7급 2021〉

④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국가7급 2021〉

④【○】

제207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②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국가7급 2021〉

정답 ④

1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1〉

- ①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③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① 【×】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9급 2020〉〈국가7급 2021〉

② 【×】

제80조 (연설금지장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국가7급 2021〉

③ 【○】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국가7급 2021〉

④ 【×】 ★ 조문집 p15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기본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할 필요성이나 이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이익 내지 정당활동의 자유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결 2013.10.24. 2012헌마311).

정답 ③

13

재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④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해설

① 【○】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② 【×】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⑤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국가9급 2014, 2019> <국가7급 2021>

③ 【○】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7급 2017, 2021> <국가9급 2020>

④ 【○】

제195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국가9급 2014, 2015, 2020> <국가7급 2021>

정답 ②

1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해설

① 【○】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7급 2021〉

② 【×】 ★ 지문의 후반부가 틀림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9〉

-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국가9급 2019〉〈국가7급 2021〉
-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9급 2019〉〈국가7급 2021〉

③ 【○】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4, 2015, 2019, 2021〉

④ 【○】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국가7급 2014, 2021〉〈국가9급 2020〉

정답 ②

15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 ②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해설

①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4, 2016, 2019, 2021〉

②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국가7급 2015, 2021〉

③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⑧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국가7급 2016, 2019, 2021〉

④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⑨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국가7급 2021〉

정답 ④

16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 아니된다.
- ④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9급 2013, 2016, 2021〉〈국가7급 2014, 2016, 2021〉

② 【×】 ★ 개정법 특강으로 끝까지 확인!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6, 2021〉〈국가9급 2021〉 <개정 2021.3.26.> ★

③ 【×】 ★ 선거인명부는 아님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 아니 된다. 〈국가7급 2021〉 <개정 2021.3.26.> ★

④ 【○】

제158조 (사전투표)

-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20〉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6〉〈국가7급 2020, 2021〉

정답 ④

17

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③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 ④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해설

① 【○】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7급 2021〉

② 【○】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가7급 2016, 2021〉

③ 【×】 ★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③ 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국가7급 2021〉

④ 【○】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국가7급 2019, 2021〉

정답 ③

18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21〉

② 【○】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9급 2014, 2019〉〈국가7급 2021〉

③ 【○】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9급 2014, 2019〉〈국가7급 2018, 2021〉

④ 【×】

제191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8, 2021〉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9급 2014, 2017, 2019〉

정답 ④

19 신문과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69조 (신문광고)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

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국가7급 2014, 2015, 2019, 2021>

② 【×】

제70조 (방송광고)

-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21>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국가9급 2017><국가7급 2021>

③ 【×】 ★

제71조 (방송광고)

-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④ 【○】

제73조 (경력방송)

-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7급 2021>

정답 ④

20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7급 2021>

- ㄱ.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박·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ㄴ.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ㄷ.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에서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해설

ㄱ 【기부행위×】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박·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국가7급 2021>

ㄴ 【기부행위×】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가7급 2019, 2021>

ㄷ 【기부행위○】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국가7급 2018, 2021>

ㄹ 【기부행위×】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국가7급 2021>

정답 ④

21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1〉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ㄴ.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ㄷ.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 내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ㄱ 【○】 ★ 조문집 p100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헌재 2020.9.24. 2018헌가15). ★★★

⇒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법을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ㄴ 【×】 ★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60①. 8호),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선법 §60①. 7호). ★★★

제60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7, 2019, 2020〉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ㄷ 【×】 ★ 지문은 2021년 4월의 중요한 최신 한재결정으로, <클로저 이상용> 유튜브강의(공직선거법 AS특강6)와 자료를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출제될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드렸고, 앞으로도 최신 중요 판례는 항상 꼼꼼하게 시험 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한 보람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에 비하여,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헌결 2021.4.29. 2019헌가11).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ㄹ 【○】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국가7급 2015, 2021> <국가9급 2019, 2021>

정답 ②

2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7급 2017, 2021>

② 【×】 ★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1>
-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7급 2021>

③ 【×】 ★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7급 2021>

④ 【×】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9, 2021>

정답 ①

23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③ 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7급 2014, 2020, 2021〉〈국가9급 2015〉

② 【×】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국가7급 2013, 2014, 2021〉〈국가9급 2018〉

③ 【×】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4, 2019〉〈국가7급 2013, 2015, 2021〉

④ 【×】★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⑫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7급 2016, 2021〉

정답 ①

24 거소투표·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7급 2021>

- ㄱ.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ㄴ.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 ㄷ.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ㄹ.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동시에 개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④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7급 2021>

ㄴ 【○】

제158조의3 (선상투표)

-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9><국가7급 2021>

ㄷ 【×】

제158조의3 (선상투표)

-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7급 2021>

ㄹ 【×】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 ③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5, 2021>

정답 ①

25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1>

-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국가9급 2013, 2016, 2017>(국가7급 2019, 2021)

②【○】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6>(국가7급 2021)

③【×】★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②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국가7급 2021>

④【×】★★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6> <국가7급 2021>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국가7급 2021>

정답 ②

클로저
이
상
용

현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모두공 법원직 민법 전임
모두경 경찰간부 민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헌법 담당

- 저서 (1)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2017, 새흐름)
 (2) 작은헌법(2018, 피앤씨에듀)
 (3) 별이 빛나는 헌법(2019, 새흐름)
 (4) 대한민국 헌법(2020, 새흐름)
 (5)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3판(2020, 새흐름)
 (6)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3판(2020, 새흐름)
 (7) 최종병기 객관식공직선거법(2020, 새흐름)
 (8) 원테이크 헌법 기본서(2020, 좋은책)
 (9) 원테이크 헌법 객관식 문제집(2021, 좋은책)
 (10) 원테이크 헌법 마무리 핸드북(2021, 좋은책)
 (11)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집 3판(2021, 새흐름)
- (12) 클로저 경찰간부 민법총칙 기본서(2021.9. 새흐름)
 (13) 클로저 경찰간부 민법총칙 핸드북(2021.9. 새흐름)
 (14) 클로저 법원직 민법 핸드북(2021.10, 새흐름 예정)